

수원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0가합3372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비룡

**피고**보조참가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경민

**변론 종결**2023. 3. 22.

**판결 선고**2023. 5.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보통주 50,140주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50,14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D에게 '피고와 C 사이에 위 50,140주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1)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0770호로 2018. 3. 28.부터 2020. 1. 10.까지 허위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횡령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6. '참가인은 원고에게 4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수원고등법원 2021나2508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7.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참가인이 461,310,811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0. 2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4. 3.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D는 차용금 3억 원을 2020. 4. 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율은 연 4.6%로 한다'는 내용의 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주식회사 D의 위 대여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4416호로 자금 대여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4. '참가인은 원고에게 435,928,347원과 그중 41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참가인의 항소 제기로 수원고등법원 2021나26990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 나. 피고의 주식회사 D 발행의 보통주 50,140주 취득

참가인은 2020. 1.경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D 발행의 보통주 50,1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참가인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참가인의 주요 재산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 | E(현재 상호 F) 비상장주식 560,306주 (액면가 1주당 500원4) 원고는 F의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이 500원이다.)                                                                                                                                                                                                                    | 280,153,000원 |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위 1.가.1)항 관련)                                                                                                       | 461,310,811원5)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손해배상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                                                         |
| 2 | 원고 회사 비상장주식 279,075주 (액면가 1주당 500원6) 원고는 원고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이 500원이다. 또한 원고는 갑 제43호증 2021. 6. 30. 기준 원고 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따라 원고 회사의 1주당 평가금액 5,467원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였으나(2022. 6. 14.자 준비서면),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기준일은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1주당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참가인 소유의 원고 회사 주식 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139,537,500원 | 원고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위 1.가.2)항 관련, 변제기가 2020. 1. 28. 이후이므로, 이자 부분에 한함)                                                                    | 11,342,465원7) = 300,000,000원 × 4.6% × 300/365일(대여일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2020. 1. 28.까지의 이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3 | G 주식 69,850주 (2020. 1.경 최고가 1주당 6,750원)                                                                                                                                                                                                                                                                                        | 471,487,500원 |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 (위 1.가.3)항 관련)                                                                                                      | 435,928,347원8)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손해배상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                                                         |
| 4 | H 비상장 주식 100,000주 (액면가 1주당 500원)                                                                                                                                                                                                                                                                                               | 50,000,000원  | D에 대한 이자채무(변제기가 2020. 1. 28. 이후이므로, 이자 부분에 한함)                                                                                       | 171,251,506원9) = 970,000,000 × 4% × 1611/365(2015. 9. 1.부터 2020. 1. 28.까지의 이자)                             |
| 5 | D 비상장주식 53,410주 (액면가 1주당 5,000원)                                                                                                                                                                                                                                                                                               | 267,050,000원 | J에 대한 대여금 채무10) 참가인은 갑 제33호증(가번호 포함)에 따른 J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 2,000,000,000원11)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대여금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                                                       |

|                      |                                                                                                             |                      |                                                                                                                                                                                                                                                                                                                                                                                                                                                                                                       |                                                    |
|----------------------|-------------------------------------------------------------------------------------------------------------|----------------------|-------------------------------------------------------------------------------------------------------------------------------------------------------------------------------------------------------------------------------------------------------------------------------------------------------------------------------------------------------------------------------------------------------------------------------------------------------------------------------------------------------|----------------------------------------------------|
| 1                    | E(현재 상호 F) 비상장주식 560,306주 (액면가 1주당 500원4) 원고는 F의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이 500원이다.) | 280,153,000원         |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위 1.가.1)항 관련)                                                                                                                                                                                                                                                                                                                                                                                                                                                                        | 461,310,811원5)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손해배상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 |
|                      |                                                                                                             |                      | <p>참가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변제 또는 상계를 통하여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병 제12호증의 1,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J 명의의 계좌로 합계 821,957,230원(2015. 6. 16. 1억 원 + 참가인이 J명의로 계좌로 벌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합계 721,957,230원)로 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대로 변제, 상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J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00,000,000원에서 위 821,957,23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78,042,770원이 잔존하고(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대여금 원금에서 참가인이 J명의로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공제하였다), 위 1,178,042,770원 및 나머지 소극재산을 합하면 2,257,875,899원이다. 이는 적극재산인 위 1,208,301,866원을 초과하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이다.</p> |                                                    |
| 6                    | 예금(K은행)                                                                                                     | 54,740원              |                                                                                                                                                                                                                                                                                                                                                                                                                                                                                                       |                                                    |
| 7                    | 예금(L은행)                                                                                                     | 1,590원               |                                                                                                                                                                                                                                                                                                                                                                                                                                                                                                       |                                                    |
| 8                    | 예금(IBK기업은행)                                                                                                 | 2,410원               |                                                                                                                                                                                                                                                                                                                                                                                                                                                                                                       |                                                    |
| 9                    | 예금(M조합)                                                                                                     | 15,126원              |                                                                                                                                                                                                                                                                                                                                                                                                                                                                                                       |                                                    |
| 2020. 1. 28. 기준 적극재산 | 1,208,301,866원                                                                                              | 2020. 1. 28. 기준 소극재산 | 3,079,833,129원                                                                                                                                                                                                                                                                                                                                                                                                                                                                                        |                                                    |

## 라. 피고와 참가인의 협의이혼

피고는 1995. 6. 29.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중 2020. 2. 5.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2020. 5. 20. 협의이혼의 사확인을 받아 2020. 5.

2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6, 29 내지 33, 41, 42, 49, 5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은행, L은행, IBK 기업은행, O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참가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2)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 P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와 참가인이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

② 참가인은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 등으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참가인과의 혼인기간이 약 25년에 이르는 점, 참가인의 전체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가액도 액면가 기준 2억 5,070만 원(50,140주 × 5,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석**

**판사조민식**

**판사신지원**

1) 이 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중 양도통지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선포한다.

2) 피고는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액면가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식발행회사들이 폐업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액면가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참가인의 N 등에 대한 투자금 배상합의에 따른 채무도 소극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20. 1. 28. 이후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위 채무를 제외하였다.

4) 원고는 F의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이 500원이다.

5)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손해배상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

6) 원고는 원고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이 500원이다. 또한 원고는 갑 제43호증 2021. 6. 30.기준 원고 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따라 원고 회사의 1주당 평가금액 5,467원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였으나(2022. 6. 14.자 준비서면),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기준일은 이 사건 증여 시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1주당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참가인 소유의 원고 회사 주식 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  $300,000,000\text{원} \times 4.6\% \times 300/365\text{일}$ (대여일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2020. 1. 28.까지의 이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8)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손해배상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

9) =  $970,000,000 \times 4\% \times 1611/365$ (2015. 9. 1.부터 2020. 1. 28.까지의 이자)

10) 참가인은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따른 J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참가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변제 또는 상계를 통하여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병 제12호증의 1,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J 명의의 계좌로 합계 821,957,230원(2015. 6. 16. 1억 원 + 참가인이 J명의의 계좌로 별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합계 721,957,230원)로 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대로 변제, 상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J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00,000,000원에서 위

821,957,23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78,042,770원이 잔존하고(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대여금 원금에서 참가인이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공제하였다), 위 1,178,042,770원 및 나머지 소극재산을 합하면 2,257,875,899원이다. 이는 적극재산인 위 1,208,301,866원을 초과하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이다.

11)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대여금 원금만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였다.